

히팅케이블 온도

관련조항 : 판단기준 제235조

Q

- 판단기준 제235조 제1항 제7호에서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며, 도로 또는 옥외 주차장에 금속피복을 한 발열선을 시설할 경우에는 발열선의 온도를 120℃ 이하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뜻은 발열선을 제작할 때 최고 발열 온도가 80℃(또는 120℃)로 제작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닌지? 즉, 발열선을 설치하여 사용 할때, 발열선의 온도는 80℃(또는 12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해석인지?

A

1. 판단기준 제235조 제1항 제7호에서 온도는 발열선의 절연물이 열에 의해 열화 또는 열화하는 것을 방지 하고, 바닥 위에 설치되는 물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온도를 제한한 것입니다. 이것은 발열선의 최고 한도 온도로서 본래 목적인 난방과 눈을 녹이는 가장 적당한 온도가 되도록 설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발열선용 절연물의 급격한 열화 또는 연화를 초래하지 않는 정도의 온도를 80℃로 제한한 것이며, 도로 또는 옥외주차장의 로드 히팅의 경우는 120℃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온도는 발열선의 온도이며 노면의 온도는 아닙니다.
2. 판단기준 제235조에서 규정하는 발열선의 규격은 KS C IEC 60800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발열선에 대한 케이블 구조, 절연체 두께, 온도, 시험 등 규격에 관한 사항은 KS C IEC 60800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